

인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가단2583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심대희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6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2022.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6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4.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한도대출 방식으로 대출하였고, 채무자는 위 금액을 한도로 한 마이너스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나. 채무자는 2018. 8. 3.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35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9.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40,000,000원이었는데, 파산선고 이후인 2018. 10. 1. 채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로부터 26,924,864원, 2018. 11. 7. 수입신용장거래취소로 인한 환불수수료 3,375원, 2018. 12. 7. 해외송금 18,940,27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194,131,491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선고 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한 채무자와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를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법률행위의 성격을 상계가 아닌 변제라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파산재단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채무자 또한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점, 그와 동일한 취지에서 파산선고 후에 부담하는 채무에 기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가 있는 후에는 위와 같은 자동변제충당약정에 기한 변제의 수령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12. 8.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만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을 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기 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868,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